

직결된 민원업무처리를 과다하게 한 직원이 담당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신속하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구민을 위한 생활행정 방향으로 업무조정이 요구됨.

○ 월동(제설)대책은 각동 공히 수립하였으나 일부 동에서는 염화칼슘 이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대장 기록관리도 소홀한 바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.

○ 보안등 수리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지출의 적정을 기하도록 할 것.

#### 나. 建議事項

- 1) 단풍나무는 구지정나무로써 가로수식재시 적극 활용토록 하고 중장기식재 계획을 수립시에도 적극 반영토록 하여 단풍나무 보급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.
- 2) 준설작업 후 토사처리가 즉시 되지 않아 악취와 주민 통행불편등을 초래하는 바 즉시 수거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.
- 3) 상수동사무소의 경우 법정동이 상수, 당인, 하중동으로 되어 있는데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연구 및 검토 요망.
- 4) 의료보험 담당직원에 대한 대민친절방안 강구 및 조치 요망

#### 다. 處理意見

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'96.1.20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, 건의사항은 금후의 정책입안, 수립,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라. 其他 特記事項

-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계장은 업무처리가 지연 방치된 부적차량 17,000건 5억 1천만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는 등 과년도 과태료 체납차량에

대하여 채권확보 압류조치 등 과정업무에 남다른 의지와 노력을 보였으므로 사기 진작책으로 표창상신 요망됨.  
○ 노고산동 : 서강대 철도주변 정비 및 동민원인 편의를 위한 주차구역 설치 운영

○ 상수동 :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결연사업 실시

○ 신수동 : 신수장학회 운영

#### 서울특별시마포구통·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(안)

##### 실사 보고서

1995. 12. 22.

총무재무위원회

##### 1. 실사 결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11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3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('95. 11. 8.)상정, 심사, 보류

제35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 ('95. 12. 22.)상정, 심사, 의결

##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 춘기

가. 개정이유

통장 위촉자격에 관하여 연령을 제한하거나 남·여를 차별함으로써 유능한 통장 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, 인구 고령화 추세 및 남·여 평등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통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위촉받은 통·반장이 상습적으로 제3자에게 직무를 대리처리케 하여 물의를 야기할 경우 해촉사유에 포함하는 등 동조례 중 미흡하였다 부분을 보완·정비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통장 및 반장의 위촉자격을 당해 통·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70세이하의 덕망과 지도능력 등이 있는 자로 규정함(안,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4항)

○ 위촉받은 통장 및 반장이 직무를 직접 처리치 않고 상습적으로 제3

- 자에게 처리케 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해촉사유로 신설 규정함(안, 제5조제5항 제3호)
-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통장에 대한 공과금 일부 면제근거 삭제(안, 제11조제1항)
3.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관수)
- 동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위촉자격을 인구고령화 추세 및 남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종전규정의 미비한 점을 정비·보완한 것으로
- 그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규정 제5조제2항제3호 규정인 구청장 재량에 의한 통장 위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통장은 반드시 당해 통에 거주하는 자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5조제3항에는 종전에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에만 규정되었던 민방위대장도 겸직하도록 규정하였고
- 안 제5조제5항제3호에 해촉사유를 추가 신설함으로써 그 동안 물의가 찾았던 대리통장의 폐단을 제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장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4. 질의 및 답변요지
- 질의요지(이인구 위원): 실제 반장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반장제도는 불필요하다고 보는데?
- 답변요지(이춘기 총무과장): 조례로서 변경은 곤란하며, 반장의 존폐여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질의요지(김충환 위원): 통장은 관할 통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촉되어야 하는데도 실제는 거주한다고 볼 수 없는 가계 등과 같은 상가에 주소를 이전해놓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?
- 답변요지(이춘기 총무과장): 사실을 인정하여 최근 일제정리를 실시한 바 있음.
- 질의요지(정만직 위원):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에도 생계수단인 가계 등에 주민등록만 돼 있고 거주는 다른 지역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 아닌가?

- 답변요지(이춘기 총무과장): 간부회의 시각동장에게 재정비토록 특별지시하겠음.
- 질의요지(이인구 위원): 지시로 끝나서는 안되고 실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?
- 답변요지(이춘기 총무과장): 전 동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인력상의 문제 가 있어 1~2개동을 표본으로 조사,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겠음.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소수위원회의 요지: 없음
8. 기타사항: 없음.
- 서울특별시마포구통·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(안)**
- 제출년월일: 1995.10.20  
제출자: 마포구청장
1. 개정이유
- 통장 위촉자격에 관하여 연령을 제한하거나, 남·여를 차별함으로써 유능한 통장 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, 인구 고령화 추세 및 남·여 평등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함으로 통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위촉받은 통·반장이 상습적으로 제3자에게 직무를 대리처리케 하여 물의를 야기할 경우를 해촉사유에 포함하는 등 동조례 중 미흡하였던 부분을 보완·정비코자 하는 것임.
2. 주요개정골자
- 통장 및 반장의 위촉자격을 당해 통·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70세이하의 덕망과 지도능력 등이 있는 자로 규정함(안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4항)
- 위촉받은 통장 및 반장이 직무를 직접 처리치 않고 상습적으로 제3자에게 처리케 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를 해촉사유로 신설 규정함(안 제5조제5항제3호)
-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통장에 대한 공과금 일부 면제근거 삭제(안 제11조제1항)
3. 개정근거
- 지방자치법(1995. 8. 4. 법률제4959호)  
제4조제6항 및 제15조

○ 민방위기본법(1993.12.27. 법률 제4608호)

제18조 제6항

#### 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### 5. 예산조치 필요성 : 불필요

#### 서울특별시마포구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통·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아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설치하는”을 “서울특별시마포구소속”으로 하고, 동조 중 “운영에 관한 사항을”을 “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1개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.

②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70세이하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장으로 위촉된  
자는 민방위 기본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 
당해 통의 민방위 대장이 된다.

④ 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70세이하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

인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.

⑤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통장은 구청장이, 해당반장은 동장이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.

- 해당 통·반이 아닌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
  - 개인의 영리행위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경우
  - 위촉받은 통장 또는 반장이 제7조에서 규정한 직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제3자에게 대리 처리케 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
  -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
  -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11조(실비수당등) ①통장에게는 예산범위  
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 
있다.

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 
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 
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통·반의 조직) ①(생략)</p> <p>② 1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 <p>제3조(통·반의 명칭과 구역)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. 통·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.</p> <p>②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.</li> <li>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.</li> <li>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.</li> </ol> <p>③ 반장을 당해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</li> <li>개인의 영리행위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</li> <li>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</li> <li>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</li> <li>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</li> </ol>	<p>제2조(통·반의 조직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1개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통·반의 명칭과 구역) ..... .....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 ..... .....</p> <p>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.</p> <p>②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70세이하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이거나 지도능력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에 의거 당해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.</p> <p>④ 반장을 당해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70세이하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⑤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구청장이, 해당 반장을 동장이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 통·반이 아닌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.</li> <li>개인의 영리행위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경우</li> <li>위촉받은 통장 또는 반장이 제7조에서 규정한 직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제3자에게 대리처리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</li> <li>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1조(실비수당등)</u> ①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②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<u>제12조(시행세칙)</u>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5.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</p> <p>6.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<u>제11조(실비수당등)</u> ①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<u>제12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  
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1995. 12. 26.
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12월 23일  
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12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제35회 정기회 제11차 위원회('95.12.26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제안설명자 :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

가. 개정이유

마포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그 동안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마포구자회에서 운영해 오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한 주민정서순화 및 문화 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개선 대책에 따라 '96년도부터는 위탁사업을 종단하고, 구에서 적영하고자 우리 구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임.

나. 주요 골자

○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

운영에관한조례(1993.6.1.조례 제223호)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관수)

○ 동 폐지조례안은 '93.6.1 마포구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마포구자회장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하고 '96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

○ '95년도 새마을이동문고 위탁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약 7,900만원으로서 지원된 예산에 비해 그 효과는 미진하였다는 구자체 평가에 의해 동 사업운영 방안을 개선하여 22,000여권의 도서는 구청과 24개 동사무소에 배분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그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

○ 그 동안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운영방안이 수립되어 할 것은 물론 이동문고 위탁종사자 3명의 실직에 따른 생계대책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요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질의요지(채재선 위원) : 이동도서관 종사자 3명에 대하여 기능직으로 특별채용 할 용의는 없는가?